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연월일	2024. . . (제 회)	

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
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총리 (인사혁신처 소관)
제출연월일	2024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재해유족급여를 수령할 수 있는 유족 중 자녀·손자녀의 연령 요건을 현행 19세 미만인 사람에서 25세 미만인 사람으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「공무원 재해보상법」이 개정(법률 제20399호, 2024. 3. 19. 공포, 2024. 6. 20. 시행)됨에 따라 순직유족연금 등의 수급권 상실 신고 및 이전을 신청하는 자녀·손자녀의 연령을 19세에서 25세로 상향하고, 출퇴근 중 경로의 일탈 또는 중단이 있더라도 해당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라고 심의회에서 인정하는 경우는 출퇴근 재해로 본다는 점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3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 없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4. 4. 12. ~ 2024. 5. 22.)

3) 행정규제 : 생 략

대통령령 제 호

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2조제1항제2호 중 “내고정술로 삽입된 금속핀 등 내고정물의 제거 수술과 의수·의족”을 “의수·의족”으로 한다.

제51조제3호 및 제4호 중 “19세”를 각각 “25세”로 한다.

제52조제3호가목1) 및 2) 중 “19세”를 각각 “25세”로 한다.

제52조의2 중 “19세”를 “25세”로 한다.

별표 2 제1호라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출퇴근 경로의 일탈 또는 중단이 있더라도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 생활에 필요한 행위라고 심의회에서 인정하는 경우는 출퇴근 재해로 본다.

별표 5의 4.의 지급요건란 제4호 중 “(제40조제1항 단서)”를 “(제40조제3항)”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24년 6월 20일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32조(재요양의 요건 및 절차) ①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법 제23조에 따른 재요양을 신청할 수 있다. 다만, 법 제28조에 따라 장해일시금을 받은 경우에는 그 지급일부터 5년까지 재요양을 신청할 수 없다.	제32조(재요양의 요건 및 절차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
1. (생략)	1. (현행과 같음)
2.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 상태에 대하여 수술(<u>내고정술로 삽입된 금속핀 등 내고정물의 제거 수술과 의수·의족</u> 장착을 위한 절단 부위의 재수술을 포함한다) 등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고 의학적인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	2. ----- ----- -- <u>의수·의족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
② ~ ⑥ (생략)	② ~ ⑥ (현행과 같음)
제51조(장해유족연금 등의 수급권 상실 신고)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장해유족연금, 순직유족연금 또는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	제51조(장해유족연금 등의 수급권 상실 신고) ----- ----- ----- -----

[illegible]

죽연금 수급권 이전 신청서에	-----
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	-----
공단에 제출해야 한다.	-----.
1.·2. (생 략)	1.·2. (현행과 같음)
3.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	3. -----
류	--
가. 수급권이 상실된 사실을	가. -----
증명하는 서류: 다음의 구	-----
분에 따른 서류	-----
1) 사망, 재혼 또는 사망한	1) -----
공무원이었던 사람과의	-----
친족관계 종료, 장애 상	-----
태에 있지 아니한 자녀	-----
또는 손자녀가 <u>19세</u> 가 된	----- <u>25세</u> -----
경우: 가족관계기록사항	-----
에 관한 증명서 또는 주	-----
민등록표 등본	-----
2) 장애 상태에 있던 <u>19세</u>	2) ----- <u>25세</u> -
이상의 자녀 또는 손자녀	-----
의 장애 상태가 해소된	-----
경우: 「장애인복지법」	-----
제32조에 따른 장애인등	-----
록증 등 장애 정도를 증	-----
명하는 서류나 같은 법	-----
제32조의3에 따라 장애인	-----
등록이 취소된 사실을 증	-----

명하는 서류	-----
나. (생 략)	나. (현행과 같음)
제52조의2(유족 등의 장애 상태	제52조의2(유족 등의 장애 상태
확인) 인사혁신처장은 재해유족	확인) -----
급여 수급권자인 <u>19세</u> 이상의	----- <u>25세</u> -----
자녀 또는 손자녀나 그 손자녀	-----
의 아버지가 법 제3조제2항제2	-----
호 또는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	-----
분 후단에 따른 장애 상태에 해	-----
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그	-----
자녀 또는 손자녀 등에게 장애	-----
상태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	-----
게 할 수 있다.	-----.